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50
----------	-------

발의연월일 : 2021. 9. 6.

발 의 자 : 김승원 · 유정주 · 김민철
박 정 · 안민석 · 이규민
한병도 · 김영진 · 이성만
김의겸 · 민형배 · 김승남
임오경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회화·조각·공예 등) 설치에 사용하게 하여, 작가들의 창작활동 진흥, 국민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그런데,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공공예술 증진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일부 작품이 심의에서 수차례 부결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입주지연 등으로 결국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박탈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미술작품 선정에 있어 건축주와 작가 간의 불공정한 계약 및

관행(대행사의 과도한 영업 등)으로 인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미지급 되고, 신진 작가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식되어, 작품의 다양성과 미술작품의 품질 하락을 초래한다는 우려와 기설치 된 미술 작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작품이 분실, 훼손, 노후화 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나.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건축주가 신진작가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미술작품 다양화를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건축주가 작가와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미술품 설치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신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미술작품의 설치에”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를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2항에 따른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과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제2항에 따른 기금으로의 출연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

가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공동주택의 건축주(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및 시정명령)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건축물 소유자와 미술작품 소유자가 다를 경우 미술작품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건축주 등”이라고 한다)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이행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3. 노후화, 도시미관 훼손 등으로 해당 건축물 미술작품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건축주 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을
철거하는 경우 미리 해당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작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100
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① 건축주가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
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정기점검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건축주 등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u>미술작품의 설치에</u>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 ----- ----- ----- ----- ----- <u>미술작품</u> (이하 “건축물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에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u>미술작품의 설치에</u> 사용하는 대신에 <u>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u> 출연할 수 있다.	② ----- ----- ----- ----- <u>건축물 미술작품</u> ----- <u>해당</u> <u>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u> <u>할하는 시·도지사가 문화예술</u> <u>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에</u> -----.
<신 설>	③ <u>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제2항에 따른 기금으로의 출연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u>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킨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숯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건축물 미술작품-----
제2항에 따른 기금-----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

제9조의2(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가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공동주택의 건축주(기숙사는 제외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및 시정명령)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건축물 소유자와 미술작품 소유자가 다를 경우 미술작품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이행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3. 노후화, 도시미관 훼손 등으로 해당 건축물 미술작품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건축주 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을 철거하는 경우 미리 해당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작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미술작품

<신 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 경우 시정명령을 한 날
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
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① 건축주가 제9
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
품 설치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
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
수한다.